

「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」 검토의견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사 유
세부평가기준 '나. 용역수행실적' 3) 전차용역 수행실적 (page 9)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	세부평가기준 '나. 용역수행실적' 3) 전차용역 수행실적 (page 9)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사업범위비율(면적, 길이 등)]에 따라 평가 - 삭제 필요	전차를 인정하여 반영한다는 것은 성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1) 용역 금액 기준은 금차용역을 수행하는데 업무의 성격과 무관하므로 삭제 필요 2) "하나의 용역에서 ~" 부분을 추가로 제한하면 과잉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 필요